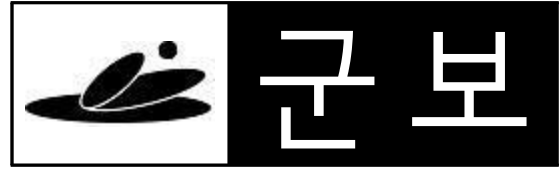


# 예 산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643호 2021. 12. 8.(수)

### 규 칙

- 예산군 규칙 제1521호 : 예산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1

### 훈 령

- 예산군 훈령 제329호 : 예산군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 규정 9
- 예산군 훈령 제330호 : 예산군 민방위경보 단말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18

### 공 고

- 예산군 공고 제2021-2100호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공고 22

###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1-2112호 : 예산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5

회									
람									

발행 예 산 군 (편집 기획담당관 ☎ 339-7144)

제19회 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21년 12월 8일

예산군 규칙 제1521호

## 예산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예산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산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을 “예산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 중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으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

제3조 중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항 중 “운영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위원회의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운영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8조 중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9조 중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운영위원회에”를 “위원회에”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영위원회에 부의될”을 “위원회에 부의될”로, “운영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운영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실행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실행위원으로”를 “실무위원으로”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실행위원회 위원장은”을 “실무위원회 위원장은”으로, “실행위원은”을 “실무위원은”으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를 “실무위원회 위원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실행위원회는”을 “실무위원회는”으로, “실행위원회의”를 “실무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실행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실행위원장”을 “실무위원장”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예산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위원은 개정규정에 따라 예산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실행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실행위원회의 위원은 개정규정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예산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p>	<p>예산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예산군 지 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 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청</u> <u>소년복지심의위원회</u>----- ----- -----.</p>
<p>제2조(설치)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 10조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 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p>	<p>제2조(설치) ----- ----- ----- <u>위기청소년의 복지 및</u> <u>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u>----- ----- <u>청소년복지</u> <u>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u>----- -----.</p>
<p>제3조(기능) 운영위원회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 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제3조(기능) <u>위원회</u>----- ----- -----.</p>
<p>제4조(구성) ① <u>운영위원회</u>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p>	<p>제4조(구성) ① <u>위원회</u>----- ----- ----- -----</p>

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록) 운영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운영위원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  
-----  
-----.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  
- 위원회-----  
-----.  
-----  
-----  
-----.

② 위원회-----  
-----  
-----  
-----  
-----  
-----.

③ 위원회-----  
-----  
-----  
-----.

제8조(회의록) 위원회-----  
-----  
-----.

제9조(출석발언) ----- 위원회 -----

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산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제3조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둔다.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제4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  
-----  
----- 위원회에 -----  
-----.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  
-----  
-----.  
-----.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 위원회에 부의될 -----  
-----  
----- 위원회의 -----  
----- 위원  
회에 실무위원회-----.

② 실무위원회-----  
----- 실무위원으로 -----  
-----.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  
----- 실무위원은 -----  
----- 실무위  
원회 위원장이 -----.

④ 실행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전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실행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  
-----  
----- 실무위원회  
의 -----.

⑤ ----- 실무위원회 -----  
----- 실무위원장-----  
-.



## 1. 제안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2021.3.23. 일부개정, 2021.9.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예산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명칭 등을 현행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변경(제명, 제1조, 제2조)
- 실행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변경함에 따른 명칭 변경(제10조)
- 약칭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예산군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21년 12월 8일

예산군 훈령 제329호

### 예산군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예산군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과의 분쟁 해결 및 부정한 녹취사용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취시스템”이란 행정전화에 의한 당사자 간의 통화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2. “녹취정보”란 당사자 간의 통화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말한다.
3. “선택적 녹취정보”란 당사자 간의 통화 중 전화 특수키를 입력하여 수동으로 녹음된 파일을 말한다.
4. “전수 녹취정보”란 송신인에게 사전에 모든 통화 내용 녹취를 공지한 후 자

동으로 녹음된 파일을 말한다.

5. “당사자”란 행정전화를 매개로 한 송신인과 수신인을 말한다.

6. “관리부서”란 녹취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지보수를 관장하는 정보통신 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7. “사용부서”란 녹취시스템을 사용하여 당사자 간의 녹취정보를 발생시킨 부서로 녹취시스템을 사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행정전화 녹취시스템을 사용하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의회사무과에 적용한다.

제4조(설치장소) 녹취시스템의 설치장소는 예산군청 정보통신실로 한다.

제5조(책임자 및 관리자 지정) 녹취시스템 책임자 및 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취시스템 정책임자: 관리부서의 장
2. 녹취시스템 부책임자: 관리부서의 담당업무 팀장
3. 녹취시스템 관리자: 녹취시스템 업무담당자

제6조(대화비밀 침해금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당사자 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들을 수 없으며, 당사자 간의 녹취정보는 다른 사람이 채록하거나 재생할 수 없다.

제7조(녹취시스템 사용) 녹취시스템 사용자는 전수 또는 선택적 녹취기능이 가능한 행정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군 소속 모든 직원(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한다. 다만, 전수녹취 시스템 사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이 관리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

은 후 사용한다.

1. 인허가, 단속, 복지 등 고질 민원이 많은 부서 직원
2. 그 밖에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원

제8조(녹취 시 사전고지) 녹취시스템의 사용자가 녹취를 할 때는 반드시 통화상 대자에게 녹취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녹취정보 열람 및 제공의 절차) ① 녹취정보는 제3자에게 열람·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당사자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문서로 요청한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문서로 요청한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녹취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인수인계증을 제출 받아 열람·제공할 수 있다.

④ 녹취정보는 당초 요구한 목적을 달성한 경우 즉시 파기해야 하며, 녹취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녹취정보 활용 및 결과통보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⑤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녹취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처리한 것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녹취정보 관리) ① 녹취시스템에 녹취되어 있는 자료는 6개월간 보관하고 이후에는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한다. 다만, 당사자가 요구하거나 녹취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업무용 컴퓨터와 녹취시스템에 저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반드시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비밀번호 등을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관리 소홀로 인한 녹취자료 유출 책임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당사자에게 있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녹취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접근 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녹취자료 유출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녹취정보를 처리 또는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녹취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예산군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예산군 행정전화 녹취정보 (열람, 제공) 신청서

신청인	부서명			
	성명		생년월일	
녹취정보	녹취일시		녹취전화번호	
	신청근거		당사자와의 관 계	
신청목적				
<p>「예산군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녹취정보를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제공)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p><b>예산군수 귀하</b></p>				
첨부서류	「예산군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 규정」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서류			

■ 예산군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녹취정보 인수·인계증

<b>1. 녹취정보 내용</b>					
관리번호	녹취일시	녹취전화번호	신청목적	파일수량	비고
<b>2. 수령일자:</b> 20   년    월    일					
<b>3. 서약 사항</b>					
본인(당 기관·단체)은 상기 녹취정보를 인수함에 있어 「예산군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라 신청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열람·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규정 위반으로 인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b>4. 녹취정보의 처리</b>					
본 녹취정보는 신청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하고 그 결과를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b>인 수 자</b>	소속: _____ 직  급: _____ 성  명: _____ (서  명)				
<b>인 계 자</b>	소속: _____ 직  급: _____ 성  명: _____ (서  명)				

■ 예산군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녹취정보 활용 및 파기 결과 통보서

### 1. 녹취정보 내용

관리번호	녹취일시	녹취전화번호	신청목적	파일수량	비 고

### 2. 녹취정보 활용 결과 및 파기 여부

자료 활용 결과	자료 파기 여부	비 고
<input type="checkbox"/> 증거활용 / 기록물 보존  <input type="checkbox"/> 경찰 등 타기관 이첩  <input type="checkbox"/> 자료 파기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파기 - 소 속: - 성 명: <input type="checkbox"/> 미파기(사유) <input type="checkbox"/> 증거활용 / 기록물 보존 <input type="checkbox"/> 경찰 등 타기관 이첩 <input type="checkbox"/> 활용 진행 중 <input type="checkbox"/> 연장요청기간 / 파기예정일 (                      /                      )	

### 3. 녹취정보의 처리

제공받은 녹취정보는 요구한 목적대로 사용하고 위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b>확 인 자</b>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 명)
----------------------	--

**예산군수 귀하**



■ 예산군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행정전화 녹취정보 관리대장

연번	구분	신청내용						인계자	인수자	결재			비고
		신청인	소속	녹취일시	녹취 전화번호	신청근거	신청목적			담당자	팀장	과장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 1. 개정이유

- 예산군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인과의 분쟁을 해결하고 녹취시스템의 부정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 목적 및 용어의 정의(제1조~제2조)
- 행정전화 녹취시스템의 적용범위 및 설치장소(제3조~제4조)
- 책임자 및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제5조)
- 대화비밀 침해금지에 관한 사항(제6조)
- 녹취시스템 사용 및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제7조~제8조)
- 녹취정보 열람 및 제공 절차에 관한 사항(제9조)
- 녹취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제10조)
-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제11조)

예산군 민방위경보 단말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 예 산 군 수 황 선 봉 인

2021년 12월 8일

예산군 훈령 제330호

## 예산군 민방위경보 단말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예산군 민방위경보 단말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예산군 민방위경보 단말 운영 규정 [별표 1]

### 경보단말 설치지역(제3조 관련)

연번	단말 명칭	설치지역	설치년도
1	예산읍 수신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176번길 15 (예산읍 행정복지센터 내)	1988. 11. 24.
2	삽교읍 수신	예산군 삽교읍 두리3길 33 (삽교읍 행정복지센터 내)	1988. 11. 24.
3	신례원1리 수신	예산군 예산읍 용골길 8 (예산읍 신례원1리 마을회관 2층 옥상)	2001. 11. 20.
4	주교2리 수신	예산읍 예산읍 역전로 94-7 (예산읍 주교2리 마을회관 2층 옥상)	2001. 11. 20.
5	덕산면 수신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391 (덕산면 행정복지센터 내)	2014. 5. 8.
6	고덕면 수신	예산군 고덕면 고덕중앙로 45-5 (고덕면 행정복지센터 내)	2018. 12. 3.
7	오가면 수신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86-12 (오가면 행정복지센터 내)	2018. 12. 3.
8	대술면 수신	예산군 예산읍 대술로 147 (대술면 행정복지센터 내)	2019. 8. 1.
9	신양면 수신	예산군 신양면 청신로 372 (신양면 행정복지센터 내)	2019. 8. 1.
10	대흥면 수신	예산군 대흥면 의좋은형제길 37 (대흥면 행정복지센터 내)	2020. 7. 1.
11	응봉면 수신	예산군 응봉면 노화조개내길 9 (응봉면 행정복지센터 내)	2020. 7. 1.
12	신암면 수신	예산군 신암면 종경길 70 (신암면 행정복지센터 내)	2020. 7. 1.
13	광시면 수신	예산군 광시면 광시소길 16 (광시면 행정복지센터 내)	2021. 8. 17.
14	봉산면 수신	예산군 봉산면 황금뜰로 3 (봉산면 행정복지센터 내)	2021. 8. 17.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b>경보단말설치지역</b>				[별표 1] <b>경보단말 설치지역(제3조 관련)</b>			
연번	단말 명칭	설치지역	설치년도	연번	단말 명칭	설치지역	설치년도
1	예산군 수신단말 10-48-14-1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176번길 15 (예산읍사무소 내)	1988.11.24.	1	예산읍 수신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176번길 15 (예산읍 행정복지센터 내)	1988. 11. 24.
2	예산군 수신단말 10-48-14-1	예산군 삼교읍 두리3길 33 (삼교읍사무소 내)	1988.11.24.	2	삼교읍 수신	예산군 삼교읍 두리3길 33 (삼교읍 행정복지센터 내)	1988. 11. 24.
3	예산군 수신단말 10-48-14-1	예산군 예산읍 용골길 8 (예산읍 신례원1리 회관 2층 옥상)	2001.11.20.	3	신례원1리 수신	예산군 예산읍 용골길 8 (예산읍 신례원1리 마을회관 2층 옥상)	2001. 11. 20.
4	예산군 수신단말 10-48-14-1	예산읍 예산읍 역전로 94-7 (예산읍 주교2리 회관 2층 옥상)	2001.11.20.	4	주교2리 수신	예산읍 예산읍 역전로 94-7 (예산읍 주교2리 마을회관 2층 옥상)	2001. 11. 20.
5	예산군 수신단말 10-48-14-1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391 (덕산면사무소 내)	2014.5.8.	5	덕산면 수신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391 (덕산면 행정복지센터 내)	2014. 5. 8.
				6	고덕면 수신	예산군 고덕면 고덕중앙로 45-5 (고덕면 행정복지센터 내)	2018. 12. 3.
				7	오가면 수신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86-12 (오가면 행정복지센터 내)	2018. 12. 3.
				8	대술면 수신	예산군 예산읍 대술로 147 (대술면 행정복지센터 내)	2019. 8. 1.
				9	신양면 수신	예산군 신양면 청신로 372 (신양면 행정복지센터 내)	2019. 8. 1.
				10	대흥면 수신	예산군 대흥면 의종은행제길 37 (대흥면 행정복지센터 내)	2020. 7. 1.
				11	응봉면 수신	예산군 응봉면 노화조개내길 9 (응봉면 행정복지센터 내)	2020. 7. 1.
				12	신암면 수신	예산군 신암면 종경길 70 (신암면 행정복지센터 내)	2020. 7. 1.
				13	광시면 수신	예산군 광시면 광시소길 16 (광시면 행정복지센터 내)	2021. 8. 17.
				14	봉산면 수신	예산군 봉산면 황금뜰로 3 (봉산면 행정복지센터 내)	2021. 8. 17.

## 1. 개정이유

- 최근 7년간 민방위경보 단말기를 지속적으로 설치함에 따라 별표 1 경보단말 설치지역을 현행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경보단말 설치지역 현행화(별표 1)
  - 설치지역 : 5개 ⇒ 14개

예산군 공고 2021 - 2100호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의 적기방제를 통한 피해확산 방지 및 건강한 소나무림의 보호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및 「산림보호법」 제24조에 의거 방제 명령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제 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또는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2항에 따라 예산군에서 직접 재선충병 방제·예방 사업을 시행할 예정임을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의2 및 제11조 제7항, 「산림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일

## 예 산 군 수

1. 공 고 명 : 2021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3차)
2. 사업위치 : 예산군 대술면 송석리 일대  
※ 세부 필지내역 붙임 참조
3. 사업기간 : 2021. 12. 3. ~ 2021. 12. 19.
4. 사업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및 감염우려목 제거, 예방나무주사
5.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적기방제 및 피해확산 방지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7. 유의사항

-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본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산군에서 방제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3조 (산림소유자 등의 의무)에 따라 방제 시 적극 협조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군청 산림녹지과 (☎041-339-76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상지별 조서 1부.



## 사업 대상 필지 내역서

연번	시도	시군	소재지			비고
			읍면동	리	지번	
소계			합계		5필지	
1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송석리	산13	
2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송석리	산17	
3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장복리	산38	
4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장복리	산44	
5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장복리	산44-1	

예산군 공고 제2021- 2112호

##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06일

**예 산 군 수**

###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2. 제안이유**

-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및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함

###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개정

-(현 행)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예산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다.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4조)

라. 기본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마.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5조)

사.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19조)

아.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26조)

####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 농정유통과 농정팀(☎ 041-339-7551 fax 041-339-755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12. 08 ~ 2021. 12. 28

나.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할 곳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농정유통과 농정팀(우편번호 32435)

붙임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예산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자치법규명 :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예산군 조례 제 호

##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산군 농업·농촌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예산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업관련 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가 목 및 나목에 정한 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농업에 관련된 단체를 말한다.
6.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7.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8.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농산물 및 음식물을 말한다.
9.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10. “식품사업자”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전통식품”이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12. “전통주”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술을 말한다.
13.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촌융복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14. “생산자조직”이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작목반 등을 말한다.
15.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이란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16.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17. “도농교류”란 도시와 농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력교류와 농산물 등의 상품, 체험, 휴양서비스, 정보, 문화 등의 교환·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농업인·소비자 등의 책무) ① 군수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 및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안정과 유통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산업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별 지원

제5조(기본방향)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의 육성발전과 농촌 개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맞춰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업종과 품목의 집중 육성에 필요한 시책
2. 농촌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 개발에 관한 시책
3. 농촌의 교육·문화·보건·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증진 시책
4. 미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관련 학과 졸업자와 우수한 농업 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시책
5. 품질 좋은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시책
6.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반가공식품 및 전통주·전통식품 등 식품의 연구개발, 식품산업의 시설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시책

제6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목표
2. 농림축산업, 농촌지역 개발 및 삶의 질 향상, 식품산업육성, 지역 역량강화 등을 위한 분야별 사업추진 방향 및 전략



3.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

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방법 및 지원대상) ① 군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용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단체 및 조직 등으로 한다.

1. 농업인
2. 농업법인
3. 생산자단체
4. 농업관련 단체
5. 식품사업자
6. 생산자조직
7.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농업인 소득보전) 군수는 세계무역기구의 협정발효(WTO) 또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이하 “협정 이행”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 및 생활 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2.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 악화로 소득원이 상실된 영세한 농업인의 생활 안정 사업

3.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기반확충에 드는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4. 농업 기계화 촉진 및 인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 지원 사업

5. 농산물의 국내 유통 및 국외 수출에 따른 포장비 및 물류비 지원 사업

6.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군수는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 촉진사업

2. 농작물 병해충 예방 및 방제 사업

3. 농산물 또는 농산물 가공식품 등의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4. 농업인, 언론매체, 소비자단체 등에 대하여 농산물 또는 농산물 가공식품의 홍보 및 교육훈련 사업

5. 농업용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 지원 사업

6. 농산물 또는 농산물 가공식품의 유통·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마케팅 및 판촉 지원 사업

7. 농산물 또는 식품산업의 유망브랜드 개발·육성 사업

8. 전통주·전통식품의 개발·소비 촉진 및 향토 산업 육성 사업

9. 산지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물류비 지원 사업

10. 우수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 사업
11. 농산물 또는 농산물 가공식품의 직거래, 로컬푸드, 박람회, 역량강화 등 직거래 유통 활성화사업
12.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및 공동선별·출하 생산자조직 육성·지원 사업
13. 농산물 종합처리시설 지원 사업
14. 농촌융복합 산업 인증 육성 및 안정적 소득 창출을 위한 신제품 및 체험프로그램의 개발, 택배비, 인증·검사 수수료 등 지원 사업
15. 학교급식 또는 공공급식 공급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 활성화 및 지역 생산 품목 확대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출하조직 육성, 작부체계(作付體系) 활성화,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
16.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및 농산물 가공활성화 지원 사업
17. 농작물 우량종묘 육성 및 종자 지원 사업
18. 기후 변화에 따른 대체작물 도입 및 보급 사업
19. 그 밖에 협정 이행으로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사업

제10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군수는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영·유아 보육사업
2. 농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

3. 농촌 어메니티 자원의 산업화, 향토문화 및 지역특산물 축제 활성화사업
4.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5. 농촌 농업인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6.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7.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확충사업
10. 그 밖에 농촌개발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도농 교류 촉진) 군수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농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의 자연환경,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휴양자원 개발 사업
2. 관광농원 개보수 및 관광농원 운영 자금(융자금) 지원 사업
3. 농촌민박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안전 교육 사업
4. 농촌민박 개보수 및 농촌민박 운영 자금(융자금) 지원 사업
5.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홍보 및 도시민 유치 활성화 사업
6. 농촌체험·휴양마을 경관보전, 기반시설 구축 및 사후관리 사업
7.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운영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관한 사업
8. 농촌체험·휴양마을 경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사업

9.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사업
10.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정보화,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업
11.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인력의 안전위생관리 및 전문인력양성 등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
12.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운영 및 외부전문 인력 활용 지원 사업
13.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행사 및 축제에 대한 지원 사업
14. 도농교류 사업을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개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업
15.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농산물 직거래, 프로그램 개발, 농촌축제 등 지원 사업
16. 도시민의 농촌 현장체험, 이해 증진 및 참여 확대에 관한 사업
17. 기관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농촌마을의 편의시설 확충 등 시설 개수·보수사업
18. 자매결연 중인 기업, 단체 등의 도농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사업
19. 그 밖에 도농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2조(농업인 및 농업관련 단체 역량강화 등) 군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및 농업관련 단체 등의 역량강화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국·도·군 단위 행사 및 각종 대회 참가 지원
2. 영농기술 향상 등을 위한 교육, 경영컨설팅, 워크숍, 국내·외 연수 등 지원
3. 도농교류·농산물 직거래 지원 및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지원 사업

제13조(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군수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농업인의 공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농업인 시상
2. 지역 농·특산물 품평 및 전시 판매
3. 도농 교류 촉진을 위한 화합 어울림 마당
4. 그 밖에 농업 발전을 위한 행사

제14조(인력육성 및 창업 지원) ① 군수는 미래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업 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 기술 및 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그 확산을 위하여 벤처농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산물, 농업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지원
2.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
3. 농기계 종합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
4. 농업재해 피해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기상이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장 지원절차 및 관리감독

제16조(지원신청) ① 농업인 등이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 또는 소재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관내 농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소수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지원사업 결정) ① 군수는 농업인 등이 제16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의 지원을 결정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20조에 따른 예산군 농업·농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지원금 교부) ① 군수가 지원 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신청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대상자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검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이하 “관계 법령”이라 한다) 및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해당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 기간과 해당 보조금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

제2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예산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심의
3.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안정,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등 정책 심의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가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건설산업국장, 농정유통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



교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업·농촌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0명 이내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조교수·연구원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3명 이내
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1명 이내

제2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위원회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회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농업·농촌 생산자단체장이 교체된 경우
4.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의 순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 지원 관련 업무의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원받은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 제21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 【붙임 1】 관계법령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농어업인등 지원의 기본원칙)**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농어업인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활한 구조조정과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등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협정의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하여는 특별 지원할 수 없다.

1. 농지의 구입·임차 등 농업경영·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2. 용수 공급 및 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3. 우량종자·우량종축의 공급 및 농자재 지원 등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 촉진
4. 친환경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유통 촉진
5.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품종 개발, 품질 향상, 가공 촉진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7. 농어업등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확대 촉진
8. 농어업등의 경영·기획·유통·광고·회계·기술개발·작목전환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9. 그 밖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어업등의 피해산정 기준과 방식, 보조 또는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부터 10년간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폐업 지원)**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과수·시설원예·축산·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들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일정기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품목의 선정기준,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산출방법·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 생산액 감소 등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에 대하여 생산자단체의 수매·비축 및 가공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가공업이 협정의 이행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관할구역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생산액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제5조,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농업인의 날)** ①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는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에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해당 지역의 농업·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정책심의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채취업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 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제5조(농수산물의 범위)** ① 법 제3조 제6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제6조(식품산업의 범위) 법제3조 제8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 1.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는 산업
- 2. 제1호의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제7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지원기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원대상 단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 다. 생산자단체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등록)** ①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 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 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 식품 명인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을 받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 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이하 “지역특산주”라 한다)

## □ 「식품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식품사업자”란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전통식품”이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

## □ 「농촌융복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이하 “통합마케팅조직”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 가. 시·군 중심 조직: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내 시·군,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 유통조직, 농업인 등이 공동 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조직으로 합의된 조직
  - 나. 품목중심 조직: 도내 2개 시·군 이상에서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과 이를 유통하는 생산자 단체 등이 출자 등을 통하여 설립한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조직으로 합의된 조직

**【붙임 2】**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주요내용)**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 및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 향상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시행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농촌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해 재정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에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안 제3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재정지원은 구체적인 사업계획구상 및 수립 등에 따라 추진할 사항으로 재정추계는 어려움

**4. 작성자 : 농정유통과장**